

의안번호	2206218
의 퇴 인	권칠승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D57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 (진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함(제2항) -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제5항)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은 보훈병원등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7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등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2조(진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할 경우, 의료지원 대상자 중 원거리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보훈병원등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지원 대상자 중 의료기관 확대로 의료지원을 추가로 받을 진료인원과 진료단가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공공병원 등을 활용하여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¹⁾
 - 동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2개의

1)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2024.2

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전체 보훈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될 진료비용은 2025년 기준 86억 7,600만원 (강원 66억 5,200만원, 제주 20억 2,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동 용역보고서의 경우, 기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자의 준 보훈병원으로의 이동수요에 따른 진료비용만을 추계하고 있으며, 접근성 확대에 의한 준 보훈병원 의료지원 신규수요는 추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로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준 보훈병원 신규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접근성 확대에 의료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이 준 보훈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신규수요 및 이들에 대한 진료비용 추계가 가장 중요함
- 또한, 기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자의 준 보훈병원으로의 이동수요는 기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 감소라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서도 보훈병원등에서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 확대시 신규수요 및 진료단가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2023년 11월 기준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 2,816개 병상이 운영중이며, 위탁병원은 전국에 67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의료지원 총액은 7,008억 5,500만원 수준임

[표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2023.11월 기준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소계 (평균)
개원일 (현위치이전일)		1953.2월 (1983.8)	'84.4월 (1992.5)	1987.4월	1993.2월	1997.11월	2018.8월	
병상수	허가병상	985	445	561	475	383	137	2,986
	운영병상	973	375	484	425	272	137	2,666
진료 과목	직제	31개	21개	24개	22개	20개	15개	133개
	운영	30개	27개	28개	20개	28개	17개	150개
환자수	외래(日)	4,538	2,139	1,734	1,815	1,614	566	12,406
	입원(日)	571	348	326	354	219	38	1,856
의료력	의사	147	70	28	62.5	51	17	376
	간호사	811	327	349	298	253	96	2,134
	전공의	100	11	10	2	5	0	128
인력 구성	정원	2450	851	823	754	623	295	5,796
	현원	2512	873	925	777	679	294	6,060
인력운영비율 (정원대비,%)		102.5%	102.6%	112.4%	103.1%	109.0%	99.7%	(104.9%)
진료 권		서울경기 강원	부산경남 제주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대전 ,충남북	인천, 강원충북	
위탁병원 수('23.11)		203	132	124	82	85	52	678

자료: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2024.2

[표 2] 의료지원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훈 병원	진료비(백만원)	387,220	378,232	394,265	382,915	428,394	2.6
	진료인원(명)	4,450,761	4,025,549	4,008,853	3,738,485	3,925,767	-3.1
	진료단가(원)	87,001	93,958	98,349	102,425	109,124	5.8
위탁 병원	진료비(백만원)	253,350	249,373	247,932	246,698	272,461	1.8
	진료인원(명)	4,444,056	4,040,404	3,710,866	3,566,577	4,014,218	-2.5
	진료단가(원)	57,009	61,720	66,812	69,169	67,874	4.5
합계	진료비(백만원)	640,570	627,605	642,197	629,613	700,855	2.3
	진료인원(명)	8,894,817	8,065,953	7,719,719	7,305,062	7,939,985	-2.8
	진료단가(원)	72,016	77,809	83,189	86,189	88,269	5.2

자료: 국가보훈부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